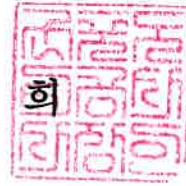


「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」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

2021년 10월 13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56호

## 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제2조(구성 및 운영)

제1항 및 제4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제6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- ① 투자심의위원회(이하‘심의회’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- ④ 외부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소속 임직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
- ⑥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“별지 제5호 서식”에 의거 보안각서를 작성해야 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개 발 사 업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개 발 사 업 부 장 조 화 현
	직 위 성 명	개 발 기 획 팀 장 최 민 기
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지 영 ( 3 9 0 - 7 7 8 9 )

[별지 제5호 서식] (제2조제6항 관련)

## 보안각서

본인은 군포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『투자심의위원회』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위원으로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, 위반 시에는 민 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.

20 . . . .

성 명 : (인)

생년월일 :

연락처 :

군포도시공사사장 귀하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 및 운영) ① 투자심의위원회(이하‘심의회’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. &lt;후단 추가&gt;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외부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연임할 수 있다.</u> 다만, 소속 임직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&lt;신설&gt;</p>	<p>제2조(구성 및 운영) ① 투자심의위원회(이하‘심의회’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의원으로 <u>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외부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1회 연임할 수 있다.</u> 다만, 소속 임직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, “별지 제5호 서식”에 의거 보안각서를 작성해야 한다.</u></p>

## 신 설

[별지 제5호 서식] (제2조제6항 관련)

### 보 안 각 서

본인은 군포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『투자심의위원회』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위원으로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, 위반 시에는 민 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.

20 . . . .

성 명 : (인)

생 년 월 일 :

연 락 처 :

군포도시공사사장 귀하

# 관계법령 발췌서

## □ 지방공기업법

### 제6조의3(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)

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(이하 “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”라 한다)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5.12.29., 2019.12.3.>

② (생략)

③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·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12.29., 2017.7.26., 2019.12.3.>

## □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

### 1. 재정건전성 강화

1-5 지방공사의 사업 경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검증 강화

○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기관\*에 타당성 조사 실시

- 사업 타당성 분석 후 내부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석 결과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증 실시 및 이사회 심의·의결로 추진
-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

\* (외부전문기관)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·고시함('16. 3. 30.)

## □ 2020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

### < 사업타당성 검토 운영기준 >

◆ 사업수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내부투자심의위원회\*의 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

\* 내부투자심의위원회는 기관 자체 규정을 따르되, 사업관련 부서의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 (자금조달, 보상, 조성, 분양 등)